

# 엔지니어링사업처 2025년 제5차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

우리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 1. 채용내용

고용형태 : 기간제 계약직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사업기간	채용구분	채용인원	근로계약기간
동북아 LNG Hub 터미널 1단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4.11.18 ~ '28.12.31	산업플랜트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12개월 (25.08.18~ 26.08.17)
합 계			1명	

## 근무조건

채용(공모)분야 <sup>주1)</sup>	근무시간	근무지	보수
산업플랜트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여수시 묘도동 2006번지 동북아엘엔지터미널 현장 내 ※ 숙소 미제공	월 6,100,000원/ 월 평균

주1) 근무기간 중 기관 사정에 따른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소정근로시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또한 근로시간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협약에 의해 변동가능

※ 연장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실적에 따른 수당 정산 지급( ) / 보상 휴가 시행( O )

※ 퇴직급여 : [계약기간 1년 미만] 미지급,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사 규정에 따라 지급

※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 개선에 따라 보수금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4.2.15에 개정된 자사 규정에 따름)

※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사용)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급여상 현장 주재비(숙소비, 교통비, 일비, 식비) 포함

※ 근로 계약기간은 해당 사업기간까지 계약연장 가능(1년 단위 계약 연장)

- 기간연장 발생 시 인사평정점수가 우등급 이상인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 가능

## □ 채용분야별 세부 직무내용

구 분	담당직무
산업플랜트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LNG 터미널 토목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무</li> <li>·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발주청을 대신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업무</li> </ul>

## 2.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 ○ 산업플랜트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구 분	자 격 기 준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li> <li>※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li> <li>· '25.8.18.(월)부터 근무 가능자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li> <li>·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없는 자</li> <li>· <b>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등급</b></li> </ul>
우대사항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NG 터미널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 유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월 × 1점 (최대 50점)</li> <li>※ 경력(개월) 산정 방법 : 근무일 수/30일 * 소수점 절사</li> <li>※ 근무일 수 및 자격증은 채용공고일까지만 인정(2025. 7. 3. 기준 예시) 25.7.2. 입사 후 25.7.4. 퇴사의 경우 : 근무일수 = 2일</li> <li>※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li> </ul> </li> <li>·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이상 보유(최대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30점), 산업기사(20점), 기능사(10점)</li> <li>※ 인정 국가기술 자격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토목<sup>1)</sup>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4.건설/142.토목 분야</li> </ul> </li> <li>※ 자격증 소지자 점수 산정기준은 종류, 개수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등급 1개만 적용</li> </ul> </li> <li>· 토목 공학계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최대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20점),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10점)</li> <li>※ 대학알리미 표준분류체계 중 공학/토목/토목공학 분야학위 인정</li> <li>※ 학위분야 인정 기준 :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해당 분야 학위만 인정</li> </ul> </li> </ul>

○ 공통(경력인정기준 및 가점사항)

구 분	공 통 사 항
경력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발급경력 증명서 경우)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분야 및 근무기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발급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li> <li>• (공인기관 등록 기술자) 기술자 등급은 공인기관의 경력증명서를 기준, 해당업무 경력 기간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등 공인기술자 경력관리기관</li> </ul> </li> <li>• (공인기관 미등록 기술자) : 아래 '가' 또는 '나'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증명 중 택1"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사 양식 : 경력증명서 양식 기준, 해당업무 경력기간으로 산정</li> <li>나. 발급기관 서식 :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분야와 근무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발급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li> </ul> </li> </ul> <p>※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p>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우대(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ul> </li> <l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가점 중복 적용</li> <li>※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li> <li>※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li> <li>※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li> </ul> </li> </ul>

### 3.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구 분	내 용										
1차전형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사지원서 및 우대사항 평가</li> <li>○ 채용예정인원의 ( 5 )배수 선발 ※ 선발 배수 : 1명 5배수, 2명 3배수, 3명 이상 2배수</li> <li>○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li> </ul>										
2차전형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li> <li>○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li> </ul>										
최종합격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전형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li> <li>○ 소수점 처리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li> <li>○ 동점자 처리기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우선순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가점 고득점자</td> </tr> <tr> <td>2순위</td> <td>장애인 등록자</td> </tr> <tr> <td>3순위</td> <td>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td> </tr> <tr> <td>4순위</td> <td>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td> </tr> </tbody> </table>	우선순위	내 용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우선순위	내 용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 전형별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5. 7. 3(목) ~ '25. 7. 1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방법 : 입사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li> <li>• 접 수 처 : <a href="https://kogastech.recruiter.co.kr">https://kogastech.recruiter.co.kr</a></li> <li>• 접수마감 : '25.7.17(목) 15시</li> <li>* 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li> </ul>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7. 2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및 입사지원 홈페이지 공고</li> </ul>
면접전형	'25. 7. 2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 새싹타워 6층</li> <li>* 면접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li> </ul>
최종합격자 발표	'25. 8. 1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입사지원 홈페이지 공고</li> </ul>
임용	'25. 8. 1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임용일 변동가능</li> </ul>

※ 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서류제출

구 비 서 류	제 출 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li> </ul>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 원본 각 1부(생년월일만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일자로 발급하여 제출</li> <li>-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반드시 군경력을 포함하여 발급</li> </ul> </li> <li>• (해당자)직장날인이 반영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li> <li>• 자격증 사본(해당자), 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증명서(해당자)<sup>주1)</sup> 1부</li> <li>• (해당자) 취업지원(보훈)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li> <li>• (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li> </ul>	면접일 제출 <sup>주2)</sup>

<sup>주1)</sup>직인이 없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sup>주2)</sup>면접당일 관련서류 미제출 시, 면접응시 불가

#### 5.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증빙서류 위·변조,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 있음
- 최종합격자 결정 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해당여부 확인서(붙임4) 징구
- 서류 제출은 면접전형 시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입사포기각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포기,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어 결원 시 충원(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에게 합격예정인원의 예비 순위 부여(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단, 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 복수의 채용분야가 있을 경우 채용분야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채용직무에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 감소될 수 있으며, 전형 과정에서 응시자가 채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격 박탈
  - 시험 부정행위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 및 지원 자격을 제한
- 채용취소
  -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 발생 시 합격 취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 응시 제한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접수된 서류 미반환)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기간제근로자도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제도 운영 기준 적용 대상이며, 아래 취업규칙에 따른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제8조 금지사항
    -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2.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사장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및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 6. 문의처

- 한국가스기술공사 엔지니어링기획팀
  - 담당자 연락처 : 02-2657-1223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172236@kogas-tech.or.kr
-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신청기한)
    - 서류전형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 (처리대상) 채용 관련 부정행위 및 불합격자 관련 이의신청 사항
  - (처리 예외 사유)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등

## 7. 참고자료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25. 7. 3.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